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24
----------	------

2020년 4월 2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4월 3일, 이영실 의원 외 1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0년 4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영실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독거노인, 저소득자, 장애인, 어린이 등의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며 이들에게 재난 및 사고대비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음.
- 그러나 해당 조례상 안전취약계층 대상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에,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등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(1)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2호)
- (2) “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변경함(안 제57조제1항~제3항)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 정의된 ‘안전취약계층’ 용어의 정의를 상위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, 제57조의 ‘안전취약계층’에 대한 다양한 표기를 통일시키려는 것으로,

[표]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.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
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</p>	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----- — 안전취약계층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----- -----</p>

<p>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_____.</p>
<p>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----- _____ -----.</p>

- 현행 조례 제2조제12호는 ‘안전취약계층’을 “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,
- 본 개정안은 이를 “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”,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”,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”, “13세 미만의 어린이” 등 상위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- 여기서,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”은 현행 조례의 ‘안전취약계층’ 정의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이나 현행 조례 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제1항에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서술하면서 “저소득층”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처럼 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’으로 명확히 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여겨짐.
-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‘안전취약계층’에 대한 재난 및 각종 사고 대비·대응 등을 위한 시책 마련·시행 시 ‘안전취약계층’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42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발 의 자 : 이영실, 전석기, 최웅식,
정진술, 김혜련, 박기열,
김용연, 홍성룡, 김동식,
김희걸, 이정인, 김평남,
김화숙, 김태수, 문장길,
이병도, 박기재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- 독거노인, 저소득자, 장애인, 어린이 등의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며 이들에게 재난 및 사고대비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음.
- 그러나 해당 조례상 안전취약계층 대상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에,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등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2호)
- 나. “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변경함(안 제57조제1항~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라. 13세 미만의 어린이

마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7조제1항 중 “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<u>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<u>노인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<u>장애인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13세 미만의 어린이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<u>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<u>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</u></p>	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----- <u>안전취약계층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</u>----- -----</p>

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---.

③ -----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-----

-----.